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-2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 개정(2011.10.17.)에 따라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에 의거 구가 설립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구의 조례로 설립하고 출연한 재단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정보공개 대상기관 정의(안 제2조)

- 집행기관을 정의하여,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재단으로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. (구→집행기관)

나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 정비 (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, 제13조, 제16조)

- 관할 →운영, 규정에 의한→따른, 의하여→따라, 기타→그 밖의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→필요한, 시행에 관하여→시행에, 아니하다 →아니한다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

2)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#### 4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(2013.3.14. ~2013.4.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

나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정보공개심의회의 성질 및 업무성격상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.

다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사항없음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3. 4. 9)

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바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호(중전의 제3호) 중 “지방자치법령 등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사무로서”를 “집행기관에서”로 한다.

3. “집행기관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및 소속 행정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구의 조례로 설립하고 출연한 재단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구(구본청, 동, 보건소 및 구의회 사무국)”를 “집행기관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구가”를 “집행기관이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구는”을 각각 “집행기관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구는 행정정보공개”를 “집행기관은 행정정보 공개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구는”을 “집행기관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아니하다”를 “아니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구는”을 “집행기관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행정 정보공개”를 “행정정보 공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한차례”를 “한 차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기타”를 “및 그 밖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관할”을 “운영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필요하다고 인정하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         <p>3. “행정정보”란 <u>지방자치법령 등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사무로서</u>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<u>구(구본청, 동, 보건소 및 구의회 사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“집행기관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및 소속 행정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에 따라</u> 구가 설립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구의 조례로 설립하고 출연한 재단을 말한다.</p> <p>4. “행정정보”란 <u>집행기관에</u> 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----- <u>집행기관</u>-----</p>

무국)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정보공개 원칙) 구가 보유·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5조(의무) ① 구는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·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구는 정보목록을 작성·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구는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청구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6조(행정정보의 공표) ① 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4조(정보공개 원칙) 집행기관이 -----  
-----  
-----.

제5조(의무) ① 집행기관은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집행기관은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집행기관은 행정정보 공개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6조(행정정보의 공표) ① 집행기관은 -----  
-----

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 
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  
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 
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  
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
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  
다.

1. ~ 3. (생략)

4.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  
보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  
구체적 범위, 주기·시기 및 방  
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 
정한다.

제7조(공개방법) ① 행정정보의  
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 
서 열람·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 
·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,  
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  
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  
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제8조(비용부담) 행정정보의 공  
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--- 아니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서울특별시 마포구  
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  
다)-----

② 제1항에 따른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제7조(공개방법) ①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----- 따라 -----

-----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비용부담) -----

-----

부담으로 하며, 그 금액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9조(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·운영) ① 구는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심의회의(이하 “심의회”라고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로 구성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다른  
다.

제9조(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·운영) ① 집행기관은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② -----  
-----  
-----

행정정보 공개

③ -----  
-----  
-----

한 차례

④ -----  
-----

그 밖의 -----

및



⑤ 심의회 구성 및 관할에 대한  
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3조(의견청취) 심의회는 필요  
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  
원,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  
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 
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 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 
정한다.

⑤ ----- 운영 -----

제13조(의견청취) ----- 필요  
한 -----

제16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  
에 -----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 
일부개정 계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.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 해당  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)

**3. 미첨부 사유**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**4. 작성자**

작성자 이름	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신서경
연 락 처	02-3153-9917